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5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직접사용의 범위 확대, 감면신청에 따른 규정 정비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사용의 범위 확대(안 제15조)

나. 지방세 감면 통지에 대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

(안 제17조제2항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3조(직접 사용의 범위)

2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3조(감면신청 등)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1. 4. 8. ~ 4. 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제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5.1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5조 중 “건축물”을 “건축물 및 주택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조사·결정”을 “확인”으로, “통지”를 “안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
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직접사용의 범위)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<u>건축물을</u>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.</p>	<p>제15조(직접사용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축물 및 주택</u>----- -----.</p>
<p>제17조(감면신청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<u>조사·결정</u>하고 그 내용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<u>통지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감면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확인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안내</u>-----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의안의 시행에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.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세무1과 차현숙 (☎ 3153-8715)